

## 결정문

---

사건번호: KR-2300243

신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리인 : 특허법인 태평양 박상진 변리사)

피신청인: 최형용 (Choi Hyeonyong)

분쟁 도메인이름 : < samsungevc.com >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대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박상진 변리사)

피신청인: 최형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5번길 5

분쟁 도메인이름은 "samsungevc.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CosmoTown Inc. 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23. 3. 31.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 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23. 4. 13.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23. 4. 24.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23. 4. 24.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23. 5. 15. 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2023. 4. 25.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23. 5. 15.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23. 5. 16.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이덕재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하였고, 2023. 5. 16.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23. 5. 17. 행정패널을 구성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

행정패널은 사건 당사자가 모두 한국(법)인이라 절차 진행언어를 한국어로 결정하고, 2023.5.19. 신청인에게 한글로 작성된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신청 보충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신청 보충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주소분쟁조정 답변 보충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정절차 명령서 전달하였다. 신청인은 2023.5.25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신청 보충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충서를 전달받은 후, 추가적인 답변 보충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3. 사실관계

신청인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상표로 등록되어 있고 널리 알려져 있는 '삼성' 및 'SAMSUNG'에 대한 상표권자이다.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2020. 3. 18. 등록하였고, 자신이 대표자로 근무하는 (주)삼성이브이씨는 전기차충전기와 그 설치 및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SAMSUNG EVC'를 출처표지로 사용하다가 신청인으로부터 '삼성' 및 'SAMSUNG'의 사용중지요청을 받은 후 상호를 '주식회사 투이스이브이씨'로 변경하고 분쟁 도메인이름의 웹 사이트에 'Samsungevc.com'은 폐쇄되었으며 강산이엔지 HP:010-2281-9166로 양도되었습니다'라고 게재하고 '투이스이브이씨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이 회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사용하고 있다.

신청인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신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을 이전할 것을 신청

하고 있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등록상표 'SAMSUNG'과 '전기차 충전'을 의미하는 'Electric Vehicle Charging'의 약어로 흔히 사용하는 'evc'를 결합한 것이므로 출처의 혼동우려가 명백하다. 아무런 권한 없는 피신청인이 저명한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우려가 있는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삼성이브이씨가 전기차충전기 및 그 설치 및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SAMSUNG EVC'를 출처표지로 사용하다가 신청인으로부터 '삼성' 및 'SAMSUNG'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상호를 '주식회사 투이스이브이씨'로 변경하고, 분쟁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 'Samsungevc.com'은 폐쇄되었으며 강산이엔지 HP:010-2281-9166로 양도되었습니다'라고 게재하고 '투이스이브이씨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이 회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는바 UDRP 제4조 (a)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등록이전되어야 한다.

#####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5. 검토 및 판단

UDRP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하에서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성**

제출된 서면과 증거에 의하면 신청인은 'SAMSUNG'이라는 문자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등록한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요부는 'samsung'이며 'evc'는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은 유사하다. 이에 본 패널은 첫번째 요건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충분한 검토를 하기 어려우나, 'samsung'이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의 상호상표인점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후 상호를 변경한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패널은 두번째 요건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의 상표 'SAMSUNG'이 전세계적으로 널리알려진 저명상표인 점에 더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2020. 3. 18. 등록하고, 자신이 대표자로 근무하는 (주)삼성이브이씨가 전기차충전기와 그 설치 및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SAMSUNG EVC'를 출처표지로 사용하다가 신청인으로부터 '삼성' 및 'SAMSUNG'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상호를 '주식회사 투이스이브이씨'로 변경하고, 분쟁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 'Samsungevc.com는 폐쇄되었으며 강산이엔지 HP:010-2281-9166로 양도되었습니다'라고 게재하고 '투이스이브이씨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이 회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사용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 패널은 세번째 요건도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 D. 소결

위와 같이 신청인은 UDRP 규정 제4조 (a)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입증하였다.

### 6. 결정

위와 같은 검토와 판단의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samsungevc.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

1인 행정패널

이덕재

결정일: 2023년 6월 13일